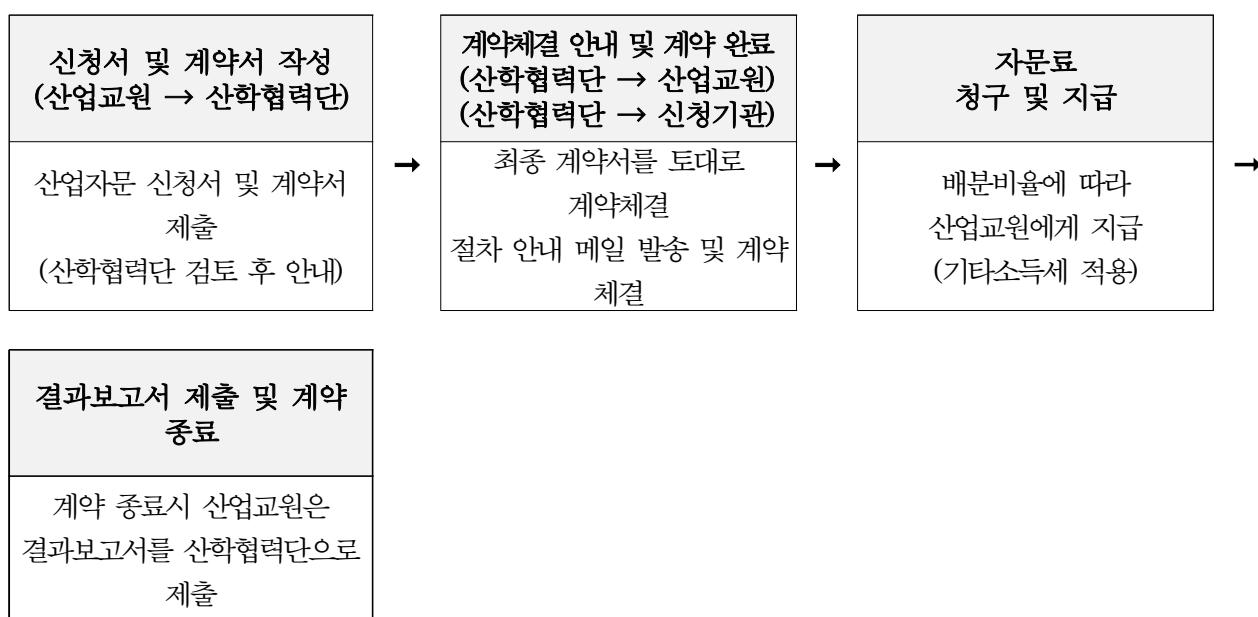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연구 성과 활용을 촉진하여 산업체 애로기술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기술료 수입 증대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
- 시기 : 연중
- 관련법령 또는 근거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(이하 ‘지식재산권 규정’이라 함)
 -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산업자문 운영에 관한 지침(이하 ‘시행지침’이라 함)
- 관련부서 : 전 부서

2. 업무흐름도

■ 산업자문 업무



* 산업교원은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함

3. 주요내용

■ 산업자문 정의 및 분류

- 산업자문 정의
 - 한국교통대학교 전임교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, 직능단체 등의 자문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(기술, 경영, 디자인 등) 지원 및 컨설팅 역할 수행
- 산업자문의 분류 : 기술자문, 경영지원, 컨설팅, 디자인 등
- 업무 처리 세부 절차
 - 자문을 희망하는 산업체 또는 산업교원은 자문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 - 자문신청서를 검토(자문목적, 자문범위 및 내용, 자문방법, 자문료)하여 산업자문계약을 체결
 - 자문 실시한 산업교원은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문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
- 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(시행지침 제7조)

산업교원	산학협력단	비교
90%	10%	산업교원은 전임교원에 한함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산업자문료 기타소득세 적용

- 기타소득세 : 소득금액의 20% 납부
 - * 소득금액(40%) = 총 수입금액(100%) - 필요경비(60%)
 - * 세법상 기타소득세율은 20%이나 총 수입금액 대비(지방소득세 포함) 8.8%에 해당

■ 교원 업적평가 반영

- 산업자문은 산학협력단이 계약금액의 10분의 1을 정수한 실적에 대하여 백만원당 20점을 인정하며, 입금일 기준으로 적용(산학협력단 인정분에 한함)